

한국은행금융결제망 IT업무 운영절차

| | | | | |
|----|---------------|------|--------|-----------|
| 제정 | 1994. 11.10. | 부장결제 | 전반 | 1820- 625 |
| 개정 | 1996. 7. 25. | 부장결제 | 전기 | 1011- 874 |
| | 1997. 12. 30. | 부장결제 | 전기 | 1011-1580 |
| | 1998. 11. 19. | 부장결제 | 전기 | 1011-1343 |
| | 1999. 9. 14. | 국장결제 | 전환 | 1011- 95 |
| | 2002. 1. 21. | 국장결제 | 전환 | 1011- 13 |
| | 2003. 6. 30. | 국장결제 | 전기 | 1011- 887 |
| | 2004. 3. 5. | 국장결제 | 전환 | 1011- 68 |
| | 2004. 11. 23. | 국장결제 | 전환 | 1011- 388 |
| | 2005. 3. 15. | 국장결제 | 전환 | 1011- 135 |
| | 2006. 4. 7. | 국장결제 | 전산결제팀 | -369 |
| | 2007. 3. 6. | 국장결제 | 전산결제팀 | -258 |
| | 2009. 4. 21. | 국장결제 | 전산결제팀 | -700 |
| | 2009. 5. 27. | 국장결제 | 전산결제팀 | -924 |
| | 2012. 4. 23. | 국장결제 | 결제시스템팀 | -685 |
| | 2013. 1. 11. | 국장결제 | 결제시스템팀 | -56 |
| | 2015. 1. 22. | 국장결제 | 결제시스템팀 | -69 |
| | 2020. 2. 12. | 국장결제 | 결제시스템팀 | -19 |
| | 2023. 2. 9. | 국장결제 | 결제시스템팀 | -149 |
| | 2024. 1. 25. | 국장결제 | 결제시스템팀 | -92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절차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한국은행금융결제망 IT업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참가기관”이란 세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이하 “한은금융망”이라 한다) 가입을 승인받은 기관을 말한다.
- 2.“이용기관”이란 세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은금융망 이용을 허용받은 기관을 말한다.
- 2의2.“연계기관”이란 세칙 제7조의2에 따라 한은금융망에 연계하는 기관을 말한다.
- 3.“단말기”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 제2조제7호의 단말기를 말한다.
- 3의2.“서버”란 한은금융망 이용을 위해 한국은행에 등록된 참가기관, 이용기관 및 연계기관의 서버를 말한다.
- 4.“장애”란 한은금융망에 사용되는 접속장비, 통신회선, 프로그램 등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5.“재해”란 자연적·인위적 재난 또는 위해(危害)로 인하여 한국은행 및 참가기관 주IT센터에서 한은금융망을 장기간 가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제2장 한은금융망 접속

제3조(통신규약) 참가기관의 한은금융망 접속용 통신규약은 TCP/IP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통신회선) ① 한은금융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참가기관은 한국은행 주IT센터와 한국은행 재해복구센터에 통신회선을 각각 연결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 주IT센터 연결용 통신회선은 공급업체가 서로 다른 2개의 전용회선으로 하고 한국은행 재해복구센터 연결용 통신회선은 1개의 공중망 회선(xDSL 등)으로 한다.

③ 한국은행 주IT센터와 참가기관 재해복구센터 및 재해복구 단말기 연결용 통신회선은 1개의 공중망 회선으로 한다.

④ 한국은행 IT전략국장은 통신회선의 용도, 장애대책 등을 고려하여 그 속도, 구성 방식 등을 참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접속장비) ① 참가기관이 한은금융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구비하여야 할 통신장비, 단말기 및 서버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서버접속의 경우 통신회선과 통신장비는 「국고전산망 IT업무 운영절차」에서 정한 통신회선 및 통신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참가기관은 한은금융망에 처음으로 접속하거나 기존 접속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1항의 통신장비를 구비한 후 한은금융망 접속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접속예정일 7영업일 전까지 한국은행 IT전략국장

④ 참가기관은 단말기의 신규 접속, 기존 단말기의 등록정보 변경 또는 삭제 등이 필요한 경우 한은금융망을 이용하여 처리희망일 1영업일 전까지 당해 단말기에 대한 정보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한은금융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은금융망 단말기 정보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⑤ 참가기관은 서버 IP 주소 및 서비스 포트(Service Port)를 처음으로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변경·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한은금융망 접속 서버 등록신청서 <별지 제2의2호 서식>를 등록희망일부터 3영업일 전까지 한국은행 IT전략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접속 해지) 한국은행 IT전략국장은 참가기관이 한은금융망 탈퇴, 그

밖의 사유로 한은금융망을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통신망 접속 장비 설정내용 삭제
2. 보안장비 설정내용 삭제

제3장 한은금융망 이용

제7조(단말기 접속 업무) ① 단말기 접속에 의한 업무처리는 한국은행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

② 참가기관은 1대 이상의 단말기를 당해 참가기관의 대표단말기로 한국은행에 등록하여야 하며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중에는 동 단말기를 한은금융망에 연결해 두어야 한다.

③ 참가기관은 1대 이상의 재해복구용 단말기를 등록할 의무가 있다.

④ 참가기관은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중에 수시로 한은금융망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내용을 열람하여야 한다.

제8조(서버 접속 업무) ① 서버 접속에 의한 업무처리는 한국은행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

② 서버 접속에 의한 업무처리를 변경하고자 하는 참가기관은 한국은행과 사전에 시스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테스트를 실시하고자 하는 참가기관은 테스트 희망일 10영업일 전까지 한국은행 금융업무실장에게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 IT전략국장과 금융업무실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협의하여 테스트를 실시한다.

제4장 장애복구 대책

제9조(장애 또는 재해 처리절차) ① 참가기관은 참가기관의 접속장비, 통신회선 등의 장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한국은행 IT전략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 IT전략국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거나 한은금융망 관련 기기의 중대한 장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한국은행 금융업무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참가기관은 장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은행 관련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참가기관은 한은금융망이 장애 또는 재해로부터 복구된 경우 장애 또는 재해가 발생하기 직전의 거래내용을 확인한 후 후속 거래를 실행하여야 하며, 거래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한국은행 관련부서 장애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 또는 재해 복구 훈련) 참가기관은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장애 복구 또는 재해복구 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5장 통신망 관리

제11조(통신회선 관리) ① 통신회선의 청약, 변경, 해지 등과 관련된 업무는 세칙 제9조제2항에 따른 통신회선 사용료 부담자가 담당한다.

② 한국은행 주IT센터와 참가기관 주IT센터 및 업무부서 단말기 연결용 전용회선의 관리는 한국은행이 담당하며 관리구간은 참가기관 측의 회선 종단장치까지로 한다. 다만, 한국은행 주IT센터와 참가기관 재해복구센터 및 재해복구 단말기 연결용 공중망 회선은 참가기관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접속장비 관리) ① 참가기관은 한은금융망용 접속장비를 최적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참가기관은 한은금융망용 접속장비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한국은행의 승인 없이 변경 또는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참가기관은 접속장비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④ 참가기관은 한국은행의 요청에 따라 접속장비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한국은행 IT전략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 IT전략국장은 참가기관의 접속장비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6장 보안대책

제13조(통신망 보안대책) ① 참가기관은 한국은행이 지정한 보안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 장비를 비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안장비에 대한 보안설정은 한국은행이 적용하며 참가기관이 이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참가기관은 한국은행의 요청에 따라 보안장비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한국은행 IT전략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 IT전략국장은 참가기관의 보안장비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④ 참가기관은 한은금융망과 참가기관의 내부 전산망을 연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국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보안대책을 적용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한국은행 재해복구센터와 참가기관 주IT센터 및 업무부서 단말기 연결용 통신회선은 한국은행 주IT센터 재해 시에만 연결하여야 하며 평상시에는 통신장비(xDSL 모뎀 등)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중망과의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으로부터 연결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즉시 연결하여야 한다.

제14조(단말기 보안대책) ① 참가기관은 단말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보를 한은금융망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개인용 컴퓨터를 임의로 접속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단말기 사용 중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 화면보호 조치를 하거나 로그아웃 상태로 전환하여야 한다.
- ③ 참가기관은 비밀번호가 연속하여 3회 이상 잘못 입력되었을 경우 단말기에 대한 비인가자의 불법침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참가기관은 단말기를 공중망에 연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국은행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참가기관은 <별표>에 정의된 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버전이 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참가기관은 한국은행의 요청에 따라 단말기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한국은행 IT전략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 IT전략국장은 참가기관의 단말기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접속장비 용도 제한) ① 참가기관은 제5조의 접속장비를 한은금융망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 IT전략국장이 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말기를 제외한 접속장비를 한은금융망 업무 외의 업무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참가기관이 책임을 진다.

제7장 보칙

제16조(이용기관 및 연계기관에의 준용) 이용기관 및 연계기관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용기관 또는 연계기관이 이 절차의 일부를 준수하기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대하여 그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994. 11. 10>

이 절차는 1994. 1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7. 25>

이 절차는 1996. 8.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2. 30>

이 절차는 1998. 2.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19>

이 절차는 1999.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 14>

이 절차는 1999. 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21>

이 절차는 2002.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30>

제1조(시행일) 이 절차는 2003. 7. 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절차 시행일 전에 「한국은행금융결제망 IT업무 운영 절차」 제3조 <별표>에 따라 설치된 접속장비들에 대하여는 이 절차에 의거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 3. 5>

이 절차는 2004. 3.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23>

이 절차는 2004. 12. 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15>

이 절차는 2005.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7>

이 절차는 2006. 4.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6>

이 절차는 2007. 3.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21>

이 절차는 2009. 4.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 27>

① (시행일) 이 절차는 2009.6.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절차 시행일 이전에 제5조 제1항에서 규정된 규격에 따라 등록된 서버접속 참가기관은 이 절차에 따라 등록된 참가기관으로 본다.

부 칙 <2009. 4. 16>

이 절차는 2009. 4.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 9>

이 절차는 2013. 1.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22>

이 절차는 2015. 1.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12>

이 절차는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23>

이 절차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9>

이 절차는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 25>

이 절차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한은금융망 접속장비 규격

1. 통신장비

가. 서버와 단말기 접속장비의 이중화 구성

| 장비 | 규격 | 수량 |
|------|---|----|
| 보안장비 | -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0 한국은행에서 운영 중인 보안장비와 호환 기능 0 한국은행이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설정 통제 기능 0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완료 | 2대 |
| 라우터 | - 인터페이스 규격 0 시리얼 포트 1개 이상 0 이더넷 포트 2개 이상 | 2대 |
| 스위치 | - L2 지원 ※ 참가기관 보안장비(VPN) - 라우터 구간 소요장비 | 2대 |

나. 단말기 접속장비의 비이중화 구성

| 장비 | 규격 | 수량 |
|------|---|------------------|
| 보안장비 | -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0 한국은행에서 운영 중인 보안장비와 호환 기능 0 한국은행이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설정 통제 기능 0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완료 | 1대 |
| 라우터 | - 인터페이스 규격 0 시리얼 포트 2개 이상 0 이더넷 포트 1개 이상 | 1대 |
| 스위치 | - L2 지원 | 선택 ¹⁾ |

주 : 1) 단말기 수량에 따라 상이

2. 단말기

| 장비 | 규격 |
|------------|--|
| P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U : 2Ghz 듀얼코어 이상 - MEMORY : 8GB 이상 - DISPLAY : 1,280x1,024 이상 - OS : Windows 10 Enterprise(LTSC) version 1809 - OFFICE : Excel 2010 이상 - 바이러스 백신 설치 - TCP/IP, HTTP 지원 - 사운드카드 및 사운드 청취 장치 |
| 프린터 | - 행정전산망용 완성형 KSC5601 한글 지원 |
|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 | - SecureToken |

3. 서버

| 규격 | 수량 | |
|---|-------|-------|
| | 프로덕션용 | 테스트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CP/IP용 소켓통신 가능 서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접속규약¹⁾을 구분하여 포트 구성 - 한국은행이 정하는 구간암호화 S/W 사용 | 1대 이상 | 1대 이상 |

주 : 1) 실시간전송 및 일괄전송

<별지 제1호 서식>

한은금융망 접속 신청서

년 월 일

한국은행 총재 귀하
한국은행 IT전략국장 참조

기관명
대표자 인

「한국은행금융결제망 IT업무 운영절차」 제5조에 따라 당행(사)의 한은금융망 이용을 위한 통신망 (신규 / 추가 / 변경) 접속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내용

- ① 접속 대상 기기 : 서버 단말기(본점) 단말기(재해복구)
- ② 통신회선

| 구분 | 통신사 | 회선속도 ¹⁾ | 설치일자 | 비고 |
|--------|-----|--------------------|----------|---|
| 전용회선 | | | 20 . . . | - 회선번호 : |
| | | | 20 . . . | - 회선번호 : |
| 공중망 회선 | | | 20 . . . | - 방식 : Static / DHCP - Static인 경우 아래 내용을 작성 o IP주소 : o Subnet : o Gateway : |

주 : 1) 단위 기입에 유의(Gbps, Mbps, Kbps 등)

③ 통신장비

| 구분 | 변경 | 제조사 및 제품명 ¹⁾ | 설치장소 ²⁾ | 설치일자 |
|------|-----|-------------------------|--------------------|----------|
| 라우터 | 변경전 | | | (미기재) |
| | 변경후 | | | 20 . . . |
| 보안장비 | 변경전 | | | (미기재) |
| | 변경후 | | | 20 . . . |
| 스위치 | 변경전 | | | (미기재) |
| | 변경후 | | | 20 . . . |

주 : 1) 신규 설치의 경우에는 “변경후” 항목에만 기재

2) 주소, 건물명, 층수, 부서명 등을 상세히 기재, 신규 설치의 경우 “변경후” 항목에만 기재

2. 담당자

| 성명 | 직책 | 소속부서 | 전화번호 |
|----|----|------|------|
| 정 | | | |
| 부 | | | |

<별지 제2호 서식>

한은금융망 단말기 정보등록 신청서

년 월 일

한국은행 총재 귀하

한국은행 IT전략국장 참조

기관명

대표자

인

「한국은행금융결제망 IT업무 운영절차」 제5조 및 제14조에 따라 당행(사)의 한은금융망 이용을 위한 단말기 정보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내용

① 신규 접속 등록

| 단말기 IP 주소 ¹⁾ | 처리희망일 ²⁾ | 신청사유 |
|-------------------------|---------------------|------|
| | | |
| | | |

주 : 1)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단말기의 IP주소를 기재
2) "YYYY.MM.DD" 형식으로 기재

② 변경(삭제 포함) 등록

| 단말기 번호 ¹⁾ | 신청구분 ²⁾ | 처리희망일 ³⁾ | 신청사유 ⁴⁾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변경하고자 하는 단말기의 번호를 기재
2) "변경" 또는 "삭제"를 기재
3) "YYYY.MM.DD" 형식으로 기재
4) 하드웨어 교체, 소프트웨어 재설치 등과 같은 변경 사유 기재

2. 담당자

| 성명 | 직책 | 소속부서 | 전화번호 |
|----|----|------|------|
| 정 | | | |
| 부 | | | |

<별지 제2의2호 서식>

한은금융망 접속 서버 등록신청서

년 월 일

한국은행 총재 귀하

한국은행 IT전략국장 참조

기관명

대표자

인

「한국은행금융결제망 IT업무 운영절차」 제5조에 따라 한은금융망 접속 서버의 IP 주소 및 서비스 포트의 등록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버 IP 주소

| 구 분 ¹⁾ | 프로덕션 | | 테스트 | | 사 유 |
|-------------------|------|-----|-----|-----|-----|
|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전 | 변경후 | |
| | | | | | |
| | | | | | |

주 : 1) 신규, 추가, 변경, 삭제로 표기

2. 서비스 포트

| 구 분 ¹⁾ | 용 도 ²⁾ | 프로덕션 | | 테스트 | | 사 유 |
|-------------------|-------------------|------|-----|-----|-----|-----|
| |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전 | 변경후 | |
| | | | | | | |
| | | | | | | |

주 : 1) 신규, 추가, 변경, 삭제로 표기

2) 실시간전송용 또는 일괄전송용으로 표기하고 파일별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미리 한국은행 IT전략국 담당자와 협의할 것

3. 서버 기종 및 운영체제(OS) :

4. 등록희망일 : 년 월 일

5. 담당자

| | 성 명 | 직 책 | 소 속 부 서 | 전화번호 |
|---|-----|-----|---------|------|
| 정 | | | | |
| 부 | | | | |

<결>